

대학교육 정보 안내 [77]

21세기의 대학

Jürgen Rüttgers/김병주(역)

목 차**1. 대학현황과 문제제기**

- 1) 세계의 변화
- 2) 대학의 역할과 과제
- 3)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 논점
 - ① 일반적인 문제
 - ② 특수한 문제
 - ③ 대학유형의 상위성으로부터 생기는 문제점

2. 귀 결

- 1) 분석과 평가
- 2) 기회

3. 대응방안

- 1) 개혁의 핵심목표 (이상 제 102호(1999. 11·12월호 개재))
- 2) 개별적인 개혁조치
 - ① 대학구조의 발전
 - ② 대학교육구조의 개혁
 - ③ 대학입학
 - ④ 대학재정
 - ⑤ 대학의 전략적 역량강화
 - ⑥ 인사의 자율성
 - ⑦ 수업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술
 - ⑧ 연구의 집중화와 결과물의 이용
 - ⑨ 보완과 자극으로서의 사립대학

4. 전망**2) 개별적인 개혁조치****① 대학구조의 발전**

그다지 많지 않은 약 200만명의 대학생 - 젊은이를 가르치는 것은 최고의 선이다 - 을 위하여 독일에는 332개의 충분한 수의 대학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대학유형의 협존하는 상이한 시스템은 직업에 상응하는 질을 갖춘

졸업과의 적극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이러한 첫 번째 목적을 위하여 새로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대학시스템은 강화되어야 한다. 전공영역의 확대를 통한 전문대학의 강화를 위한 기준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실무와의 연계성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전문대학에서 직장과 대학의 교육장소 연계를 통한 이원적 교육과정으로 조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행정전문대학은 이원적 교육관점을 유지하면서 정규적인 전문대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해야 한다.

직업학교(Berufssakademie)는 제3의 교육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교육분야에서 경쟁을 추가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② 대학교육구조의 개혁

학생의 극히 일부분만 좁은 의미의 학문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 학생의 대다수는 직무수행에 충분한 질적 수준을 구비한 대학졸업자로서 장차 대학이나 학문적인 연구소 이외의 노동시장에서 신뢰할만한 일자리를 구한다. 학사구조는 이러한 상황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개혁의 결정적 단초는 교육과정을 명확하고 구속력 있게 정비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정규수학기간 동안 취득할 수 있는 직무수행에 충분한 질적 수준을 구비한 졸업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를 명백히 구별해야 한다. 후자를 위해서는 특히 대학원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과정은 더욱 증설하고 장차 학문후속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독일 대학의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직무수행능력을 구비한 첫번째 졸업까지의 교육은 정규수학기간이 대다수 학생들에 의하여 엄수되고 또한 엄

수될 수 있도록 편성되며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정규수학기간은 실습학기를 포함하여 전문대학은 8학기, 종합대학은 9학기로 제한되어야 한다. 독일에서 수학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사실이 학생수 증가와 대학의 과중한 부담 그리고 독일대학에 대한 국제적인 매력을 감소시키는 본질적인 이유이다. 대학은 긴장감 넘치는 교육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자극을 주기 위하여 장차 학생수와 정규수학기간 내의 졸업이 대학교육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배분의 결정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 외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 유일하게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길이며, 특히 대학관련 법규정과 수학기간의 제한과 관련된 다른 여러 조치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과 대비된다.

학생들에게 조기에 자신의 소질과 장래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학업성취도증명과 중간시험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늦어도 6학기 수료까지 중간시험 합격이 학업지속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 대학은 적절치 못한 학생에게 보다 조기에 다른 교육을 받도록 조언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유투규정' (Freischu *Bregelung*, 역자주: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한 학과의 경우 정규수학기간 안에 응시하는 학생에게 시험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은 대학교육의 신속화라는 관점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이는 그것에 상응한 모든 시험규정에 도입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졸업제도와 학점제도를 포함한 현대적인 학사기구 및 시험기관은 출석학습은 물론 원격학습에 있어서도 학습능력 및 시험성적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국제적인 유동성, 그리고 독일 내의 대학들간의 유동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앞의 규정을 지지하여야 한다.

교수, 학습, 연구에 있어서 대학의 국제적 연계의 의미는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파트너의 대학시스템에서 우리 졸업의 국제적 호환성과 투명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내용 및 조직의 강화를 위하여 개방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독일 디플롬의 인지도나 적용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반대로 영미의 졸업모델(학사, 석사, 박사)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대학에서 지금까지 수여해오고 있는 것에 추가하여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수여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따라서 대체로 최소한 3년후에 학사학위와 추가로 2년까지의 수학후에는 석사학위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학위가 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4년 내지 4년반이 걸리는 디플롬 학위과정과 경쟁을 벌일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상황의 전개과정에 맡겨두어야 한다.

대학교육구조의 개혁은 동시에 학문적인 재교육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학문적인 재교육의 제공자로서 대학의 지위는 강화되어야 한다.

③ 대학입학

대학학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비율을 제고하고, 대학의 다른 특성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대학간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입학생 선발시 대학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앞으로 수학능력검정시험(Abitur)은 대학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적성에 대한 증명에 그칠 것이다. 스포츠, 미술, 음악 그리고 2가지 언어로 진행하는 교과과정에서는 혁신제도 그 이상의 조건충족을 요구한다.

입학이 재한되는 학과의 학생선발에서 선발면담, 시험, 전공에 특유한 능력의 요구 또는 개별 전공을 위한 적성에 관해서 설명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고등학교성적의 평가 등이 추가적인 선발도구로서 필요한 범위안에서 대학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첫 단계로서 전국적으로 지원자가 초과하는 전공의 경우 학생선발과정에 대학의 개입이 지금까지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ZVS절차는 전국적으로 지원자가 초과하는 모든 전공분야에서 적성과 동기라는 기

준에 의거 지원학생의 일부분을 대학이 스스로 선발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능성은 의학분야에서만 존재했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입학정원제에 해당하는 전공인 경우도 대학이 관여해야 한다.

나아가 성적평균, 시험결과 그리고 대기기간 등의 기준에 의거 선발된 지원자를 개별 대학들에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초과지원 대학의 이런 식의 결정은 거의 전적으로 대학에 거주지가 근접해 있는지 여부와 같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비록 대학 인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장 유능한 지원자를 대학이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정원의 대다수에 대하여는 사회적 기준에 따른 배분도 동시에 유지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규율되는 대학입학에 있어서는 입학시험은 없지만 조기에 규정에 따른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2학기만 지난 후의 학업성취정도를 검증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와 같은 절차를 고려하는 생각은 학업개시 전후에 학업상담이 집중적으로 확대되며, 대학의 수준에 상응하는 구조상의 조치(‘학사담당부서장’(Studiendekan))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동등한 가치평가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매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대학입학은 직업에 상응하는 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

④ 대학재정

중심적인 개혁조치는 대학예산 - 전체예산(Hochschul- Globalhaushalten)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연계된 능력지향적 대학재정의 도입이다. 대학은 자유로운 손을 필요로 한다. 대학은 국가에 의하여 배정된 전체예산은 물론 제3자가 제공한 재원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강화된 재정자치를 통한 대학의 ‘탈국가화’(Entstaatlichung)는 대학의 유연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

한 결정적인 진전이 된다. 국가의 역할은 대학의 질을 확보하는 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한되어야 한다.

주는 기본적인 재정지원이 확보된 전제하에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원칙적으로 연구와 교수라는 기준 그리고 학문후계자의 지원과정에서 나타난 실적에 상응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대학 내부의 지원예산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학 스스로 해야 한다. 이는 입법자, 정치적 책임이 있는 자, 관료 등과 같은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개별 대학운영자들의 권한 강화와 전문화를 요한다.

적어도 예산항목의 지속적인 보전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예산의 신축적 운용이 여기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재정학적 예산운용에 병행하여 경제계획의 범위내에서 상업적 원칙에 의거 경제적 운용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가를 통한 대학예산의 예산법 규에 따른 세부적 조정은 프로그램 조정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때마다의 능력 및 질의 기준은 유럽지역의 다른 나라에서 수년 전부터 존재해 온 모델과 그에 따른 경험을 고려하여 대학과 공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평가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법정수학기간내의 학생수,

법정기간내에 학업을 종료한 졸업생수;

간접적 예산(Drittmittel)의 범위;

특허등록;

공인 받은 출판물;

학술분야의 수상실적.

처음부터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시도하기에 앞서 먼저 간이하고 실용적인 도입모델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간이하면서도 업적지향적인 배분시스템은 단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평가가 가능한 현존하는,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예산배분체계보다는 좋다.

급여에 관한 법규정에서 교수, 재교육 그리고 간접적인 예산지원을 받는 연구(Drittmittforschung) 등의 영역에서 특별한 참여를 위한 추가적인 능력을 자극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수업이나 시험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법정의 수업의무를 초과한 교수활동이나 재교육의 경우에도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도 개인적으로 간접적인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여 이에 상응하는 연구계획을 추진하는 교수를 위한 연구수당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대학교수의 급료에서 능력원칙은 지금까지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국가가 대학에 제공한 예산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대학에 전적으로 위임되는 추가적인 세입을 필요로 한다. 목적설정의 척도에 따라 연구와 교수에 있어서 개별 대학의 능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적 차원에서 확보되는 연구비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체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대학은 적어도 경영활동과 같은 부분 영역(재교육, 기술이전, 공장설비, 기자재)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대학의 전략적 역량강화

한편으로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 업무수행의 능력제고를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대학의 권한은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의 중앙 위원회는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 임무로서 대학 자체의 능력의 단면과 대학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조정을 고려하는 대학의 보다 장기적인 능력발현범위를 확대·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학사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은 보다 많은 결정권한을 가지고 대학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대학에 있어서 국가적 관여는 축소되고 중앙위원회와 총장의 더 큰 자기책임과 결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경영을 통하여 일상적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부담은 경감되어야 한다.

대학의 운영은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운영자는 예산편성의 책임과 대학 내부의 예산배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전공분야의 내부에서도 그 장의 책임은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기 책임영역을 가진 학장대리직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대학은 전공영역에서 단일 운영체계와 집합적 운영체계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대학의 자기결정적 통제는 오직 대학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약점을 가능한 한 꾸밈없이 파악할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오직 이러한 기반 위에서 대학운영자의 효율적이고 내부적인 자기통제와 자기결정적 최적화는 성공할 수 있다. 대학은 동시에 연구, 교수, 후진양성 그리고 공공분야 활동에서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공중은 대학에 앞으로 더욱 자치적 자기결정에 위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은 스스로의 자극에 의하여 자신의 능력 특히 교수학습능력에 대한 반복적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자기통제목적을 위한 대학의 자체적인 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 이것은 필요적인 일단계 절차이다 -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각각의 자기 주 인에서 비교가능하고 그리고 주 사이에도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외부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참여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불가결하다.

이것은 개별 구성원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학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대학 자신의 숨김없는 평가보고는 질의 보장과 능력최적화로 기능하는 체계와 관련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율과 공공지출의 합법적인 능력보장 사이에서 비교교량되어야 하는 국가와 대학간의 균형과도 관련된다.

⑥ 인사의 자율성

대학의 인사권은 강화되어야 한다. 자기책임에 의한 대학 구성원의 임용을 관장하는 것은 대학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교수초빙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대학운영자의 선발과 임명은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 남는다. 결정 관할에 있어서 국가에서 대학평의회 (Hochulrat. Board)로의 위임은 모범적 사례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동등한 가치가 있는 학문적인 업적이 있으면 앞으로는 교수초빙시에 교수자격취득시험(Habilitation)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교수초빙을 할 경우 법규에 의거 외부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는 교수직의 위임을 위해서 현재의 전문성보다. 개별 전공에 대한 장래의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교수의 초빙에서 교수의 대학교육 적합성 (hochschulpadagogische Eignung)이 보다 강하게 고려된다. 적합성은 이제부터는 - 현행 고등교육기본법 (Hochschulrahmengesetz, HRG)에서와 같이 -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신축적인 인력구조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공무원(Beamte 또는 Angestellte)으로 초빙되는 교수는 앞으로는 보다 많이 임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보다 더욱 신축적으로 변화된 요구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교수직이나 연구소의 인적, 물적 설비에 관한 초빙승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한다.

교수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연구과제는 없지만 자기 전공분야의 현재의 연구성과에 관한 상시적인 강의안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학술적인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자에게 오직 당해 강좌에 한하여 교수는 현재 강의의 일부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강좌를 변경할 수 있다.

학문후세대의 유동성은 대학에 대한 시간제의 근무관계로 고용된 시간제 공무원에 있어서 대학 밖의 사적 또는 공적 연구시설에서 학문적인 연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⑦ 수업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기술은 대학에 다양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가상도서관은 폐관시간이나 대출중인 도서라는 것을 모른다. CD-Rom강의로 진행하는 전공담당자는 강의를 동시적으로 진행하여 전체 대학의 질을 높이고 풍성하게 해준다. 상호적인 On-Line강의는 수업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지식을 함께 학습하고, 보다 많은 학생을 위한 중요한 실험을 개발하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경우 동시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학생칩카드(Studenten-Chipkarte)는 동시에 학생증, 학적부, 학생등록부, 주차증, 식당카드 등이 된다.

현대적인 기술과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동시에 대학의 관습도 변화를 겪고 있다. 상호적인 학습소프트웨어는 원격지 교육과 재교육을 위하여 새로운 질의 향상을 가져다 준다. 수업은 원격수업 요소와의 연계를 통하여 출석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출석과 원격지 교과과정의 통합은 자신의 생활조건과 신축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한다. 원격지 수업의 기술적 그리고 교수법상의 가능성은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적인 가능성을 통한 학문적인 교육과 재교육에서의 발전은 수학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용된다는 분명한 전전을 보고 있다.

대학에서의 수업은 10년 안에 디지털 매체와 그의 대내·외적 연결망의 확충을 통하여 아마도 100년 전에는 실례를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보고 있다. 디지털매체인 컴퓨터는 교수학습에 있어서 표준적인 도구가 되었다. 이미 미국에서는 컴퓨터실험실이 이용되는 대학 강좌의 비율이 단 1년동안 9%에서 23%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매체는 표준적인 기재가 된다. 여기에 여러 대학의 다면적 매체를 이용한 연계를 통하여 특히 기초과학과 표준기술의 연계 분야에서 변화된 학습기회를 구축하는 시도도 추가적으로 매우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가상대학).

전세계적인 연결망의 이용을 통한 새로운 다면적 매체

의 연계기술을 통하여 대학의 교수학습법의 확충은 앞으로 대학학습의 기본적 기능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지식의 중계와 기술의 습득에 있어서 혼저한 합리화효과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도 대학은 여전히 교수학습에 있어서 그의 고유한 자유영역을 잃지 않는다: 학생과의 토론, 자기결정적 학습의 지원 그리고 기초적 연구과정에 대한 통찰을 통한 지식생성과정의 매개.

⑧ 연구의 집중화와 결과물의 이용

- 독일의 대학은 연구를 위한 광범위한 기반이다. 모든 대학은 대학이 가진 혤존하는 자원의 범위 안에서 중점 연구분야를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또 그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개별 대학은 모든 분야에 동등한 강도로 연구활동 지원을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문후계자에 대한 교육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이 학문적으로 제공하는 총량의 범위 안에서 연구의 범위와 끊임없는 혁신능력을 보장한다. 전문화,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중기간적인 집중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설비 등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중요한 영역이 대학 외부의 전문화된 시설에서도 실행될 필요성을 긍정하게 해준다. 그렇지만 연구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의 학문후계자 양성과 이들 영역과는 끊임없이 피드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외부연구시설의 운영자를 공동으로 초빙하는 방법과 대학 외부의 연구소의 학문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교수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대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대학의 연구강화를 위한 혁신의 기초로서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학부의 벽을 넘어서 대학에 기간이 정해진 연구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대학의 교수들은 기간을 정하여 이중기능을 하면서 협력한다. 이들 시설은 자체의 인원과 연구체원으로 설치

되어야 한다: 거기에 초빙된 교수들은 수업시간수 축소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다시 마찬가지로 기간을 정하여 요청되고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시설의 프로그램에 특별한 기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초청교수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시설은 대학원교육에서 특별한 역할을 위임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교육과정의 담당기관이 될 수도 있다. 대학은 연구프로그램의 기초에 터잡아 그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프로그램 비용의 주요 부분을 자체의 전체예산에서 배정받아야 한다.

연구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중점연구과제의 개발을 위한 앞으로 대학의 특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는 개별 전공의 연구방향과 가능한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정해지는 초빙정책이다.

- 대학에서의 고급 연구는 앞으로 보장되고 강화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더욱 잘 활용되어야 한다. 절차개혁과 생산혁신을 통하여 학문적인 지식에서 경제적인 성과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축되어야 한다. 대학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의 개선을 위해서 연방교육부는 특허보호의 영역에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미국에서는 특허획득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특허등록 및 특허이용관서가 사람이건 국립이건 대학을 지원해주고 있다. 국가적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로부터 나오는 특허등록을 위한 여건조성은 미국에서는 이른바 Bayh-Dole-Act를 통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 법에 따라 대학은 그러한 지원프로젝트의 성과물을 자기 이름으로 특허등록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대학은 특허이용을 통한 수입을 얻거나 특허를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대학은 베타적으로 특허를 양도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에는 대학의 그와 같은 적극적 활동을 오히려 방해하는 대학교수의 특권과 회계법상의 규정이 존재한다. 대학에서 특허는 재정수입상황의 개선

을 위한 가능성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전에 특허등록이 없는 경우 단지 참작할 수만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에게 종종 연구결과를 공적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사실도 분명히 해명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대학을 위한 자극이 있어야 한다. 특허등록과 발명획득에 대한 대학의 관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체경제적 활동가능성 영역에서 발명근로자법 (Arbeitnehmererfindergesetz)의 개정을 통하여 사용에 있어서 특권을 폐지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연방교육부는 특허등록이 연구결과의 공간 이후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Neuheitschonfrist(신기술이 개발되면 기존의 특권을 철회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 연구의 능력지향적 운영을 위한 구조적 요소로서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없었다. 전통적인 기본재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연구목적을 위한 능력과 연계한 자원배분은 연구수행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연구지원기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⑨ 보완과 자극으로서의 사립대학

독일 대학교육체계는 현재 332개의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269개는 주가 관광하는 국립대학이며 63개 대학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이다(물론 전체적인 학생수는 30,000명에 불과하다: 이중에는 하나 또는 불과 수개의 전공분야를 가진 아주 작은 시설이 포함된다).

독일에서 비국립대학의 수가 지금까지도 제한되어 있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연유한다:

- 교육, 특히 대학교육은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임무로 널리 이해되어 있다.
- 대학교육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무엇보다도 국립대학을 견지하고 있다. 바이마르헌법 제137조와 관련된 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교회는 그 성직자와 기타 관계자의 교육을 위하여 사회적인 기관의 하나로

서 자체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나아가 비국립의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비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인정에 관한 결정은 기본법상의 연방과 주 사이의 업무분장에 따라 전적으로 주가 담당한다. 사립대학에 친화적으로 개정한 고등 교육기본법은 제70조에서, 만약에 비국립대학에 대하여 국가의 승인이 내려질 수 있으려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추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소요건은 교육, 연구 그리고 내부조직에 있어서 국립대학이 발전시켜온 기준에 상응해야 한다.
- 국립대학의 어려운 상황과 팽창된 공공예산의 문제를 감안하면 비국립대학의 대학 프로젝트의 지원은 종종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보조가 극히 어려운 국립대학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독자적인 사립대학의 경영은 따라서 별로 성공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분야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적 부분이 참여함으로써 새롭고 추가적인 발전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 비국립대학 프로젝트영역에서 대학의 교수, 연구 그리고 내부 조직의 능력을 강화하고 구조, 담당자 그리고 제정에서의 더 넓은 다양화를 위하여 새로운 계획초안이 시험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과부하가 걸린 국립대학분야에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중요한 대학개혁 프로젝트가 이로 인하여 실현될 수 있다.
- 더 넓은 능력과 다양화의 과정에서 각각 더 좋은 해결책을 둘러싸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강화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체 대학의 경쟁력과 국제경쟁력은 강화된다. 연방은 벌써 오래 전부터 대학영역에서 비국가적인 대학분야의 추진을 환영해왔으며 의미있는 비국립대학프로젝트를 가능한 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방정부

는 예를 들어 HBFG-Forderung(지원)을 비국립 대학에 유리하게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비국립대학의 많은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연방정부는 국제경쟁력 향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제도를 혁신하는 방법으로 비국립대학의 정당한 관심사를 더욱 지원할 것이다.

4. 전망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연방, 주, 대학을 위한 야심찬 개혁 프로그램이다. 우리들 공동체의 문제해결 능력과 혁신

가능성을 위한 결정적인 중요성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미래의 보장은 교육시스템의 혁신을 요구한다 - 그 선도자는 대학일 수밖에 없다! ■■■

김병주

국민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고 독일 튜빙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독일 소년시법보호제도」(공저), 「정폭력과 경찰역할」 등이 있다.